

인천지방법원 2024. 10. 31 선고 2023가단296475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주식회사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자유라이프

담당변호사 이환, 정승환

피 고 1. B

2. C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진시호

피고들 법정대리인 친권자부 D, 친권자모 E

변 론 종 결 2024. 10. 10.

판 결 선 고 2024. 10. 31.

주 문

1. 피고들과 소외 D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1. 12. 23. 체결된 증여계약을 각 취소한다.
2. 피고들은 소외 D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인천지방법원 강화등기소 2021. 12. 27. 접수 제40789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각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20. 8. 28. 주식회사 F(이하 'F'라고 한다)와 사이에, 원고가 F에게 'G 신용대출' 명목으로 270,000,000원을 대출하여 주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D은 F의 대표자 사내이사로서 위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이하 위 대출금을 '이 사건 대출금'이라고 한다).

나. D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2021. 12. 27. 자신의 자녀들인 피고들에게 각 1/2 지분에 관하여 2021. 12. 23.자 증여계약(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고 한다)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제소기간 도과 항변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증여계약이 체결된 2021. 12. 23.로부터 1년이 도과한 2023. 11. 13. 제기되었으므로 민법 제406조 제2항의 제소기간을 도과하였다(2024. 8. 28.자 준비서면 제5, 6면).

나. 판단

1)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그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말한다. 이때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23. 4. 13. 선고 2021다309231 판결 등 참조).

2)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무렵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사실 및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D에게도 사해의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오히려 갑 제1, 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2021. 12. 27. 이루어진 점, 위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졌다고 하여 원고가 이를 곧바로 알기는 어려운 점, 원고로부터 D에 대한 채권 추심을 의뢰받은 H 주식회사는 2023. 9. 18. 피고들에게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로 의심된다는 안내문을 발송하였던 점, 원고는 2023. 9. 26.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특수채권으로 편입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는 2023. 9.경 이 사건 증여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1년이 도과하지 않은 2023. 11. 13.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다.

4) 따라서 피고들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대한 판단

가. 사해행위취소권의 발생

1) 피보전채권의 존재

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전에 이 사건 대출금 채무가 성립하여 D은 연대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대하여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함에 있어 피보전채권이 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피고들은 이에 대하여, D이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하여 근보증 약정을 체결할 당시의 계약서(갑

제6호증의 1)에 작성일, 보증채무의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도 않고 약관을 설명한 직원에 대해서도 기재되어 있지 않은 바, D의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근보증 채무는 성립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변론 전체의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D은 2020. 8. 28. F의 대표자로서 피고와 사이에 여신거래약정서를 작성하면서 여신과목, 여신금액, 여신한도 개시일 등을 직접 확인하여 기재하고 체크하였던 점, ② D은 위 여신거래약정서를 작성하면서 자신이 위 채무를 연대보증한다는 내용의 근보증서를 작성하면서 이에 대하여 서명날인하였던 점, ③ D은 위 근보증서의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과 이 계약서 사본을 확실히 수령하였습니까? 위 약관과 계약서의 중요한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습니까? 채무자의 부채현황, 연체유무 등의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습니까?’라는 질문에 모두 ‘수령함, 들었음’이라고 자필 기재하였던 점, ④ D은 이 사건 대출금 채무에 대하여 2021. 8. 9.자, 2021. 8. 26.자, 2022. 11. 25.자 기한연장조건변경 추가약정을 체결하면서 최초 약정금액, 여신과목, 최초 약정일자, 계좌번호 등이 모두 기재된 서면에 서명날인하거나 전자서명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대출금에 대한 근보증 채무는 적법하게 성립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채무초과 여부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 I 주식회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D의 적극재산은 이 사건 부동산이 유일하였던 반면, J은 아래와 같은 내역의 합계 약 2,495,618,000원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는바, D은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거나 이 사건 증여계약으로 채무초과상태가 심화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순번	채권자	채무내역	채무액(원)	비고
1	K카드	카드대금	800,000	
2	A은행	보증채무	231,250,000	
3	기업은행	"	1,067,905,000	
4	L캐피탈	"	60,663,000	
5	M보증보험	"	100,000,000	
6	N은행	"	370,000,000	
7	한국무역보험공사	"	665,000,000	
합계			2,495,618,000	

3) 사해행위 및 사해의사

가)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하거나 이전 받은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증여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수익자가 그 증여행위 당시 선의였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채권자는 그 증여행위를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다12526 판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수익자의 선의를 인정함에 있어서는 증명책임의 기본원칙에 비추어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자료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7다74843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증여계약 당시 D은 적극재산이 소극재산을 초과하여 무자력 상태였던 점, D은 이 사건 대출금을 포함하여 각종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미성년자 자녀들인 피고들에게 증여함으로써 원고를 비롯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공동담보를 감소시켰는바,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D의 사해의사 및 수익자인 피고들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원상회복의 방법

1)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고, 만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하는바, 여기에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 함은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능인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그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139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없는 바,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들은 D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증여계약을 원인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승엽

별지